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 3 1 4 회　임 시 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5. 9.

강 한 곤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강한곤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어린이와 유모차 동반 주민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을 정비하여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안 제3조제3항제4호에서,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또는 유모차를 동반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○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

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,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유모차 동반 주민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,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**공원의 이용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**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강한곤 의원 대표발의】

의안 번호	00925087

발의연월일: 2025. 9. 3.
발 의 자: 강한곤 김정희 정순옥
고명욱 김장관 장호섭

1. 제안이유

○ 어린이와 유모차 동반 주민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을 정비하여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또는 유모차를 동반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도록 함(안 제3조제3항제4호 신설).

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라목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3항

나. 비용추계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또는 유모차를 동반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) ①·② (생 략) ③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<신 설>	제3조(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또는 유모차를 동반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한다.

【 관계법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 8. 8., 2024. 1. 9.>

1. (생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
   가. ~ 다. (생략)
   라. 노인 · 아동 · 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  마. ~ 차. (생략)
3. ~ 7. (생략)

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9조(공원시설의 설치 · 관리기준) ① ~ ② (생략)

③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 · 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.